

의안
번호

36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66호
- 다. 제출일자 : 2024. 11. 7.
-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서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구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 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 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과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추진계획」 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사항 조문 개정(안 제6조제4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민원문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로 개정

나. 수수료 감면에 따른 별표 정비(별표 제1호)

－ 별표 제1호 중 타목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24-50호, 2024.1.2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개선 권고 사항과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추진계획」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증명서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구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우리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보면 구청을 비롯하여 각 동주민센터 등에 3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조례 개정으로 12종 수수료 면제 이후 발급 건수는 증가추세임.

〈연도별 수수료 징수 및 발급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비 고
수수료 징수액	39,265천원	2,793천원	3,387천원	2,083천원	
발급 건수	171,704건	279,658건	287,794건	169,336건	

□ 주요내용

- 안 제6조제4항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12종의 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타 법령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법원 수입 3종을 제외한 유료증명서 33종을 추가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발급서류 현황〉

(2024. 7월 기준)

수입귀속	수수료	발급서류	발급비율	비 고
계		124종	100%	
구 제외수입 (121종)	무료 (88종)	2022년 면제 시행 12종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납세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기존 무료 76종	75%	
	유료 (33종)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2%	300~1,500원
법원수입 (3종)	유료 (3종)	(법인인감, 부동산·법인등기부등본)	2%	•법원수입 •면제대상 제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33종의 수수료 면제 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따른 수수료 감면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종로구, 중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전면 면제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구민만족도 향상 차원에서 수수료 전면 면제 확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추가 면제 33종 유료증명서〉

구분(33종)	증명서 종류	수수료
토지·지적·건축 (9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원
	토지(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500원
		500원
차량(4종)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300원
		500원
농촌(1종)	농지대장	500원
지방세(18종)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 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 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800원
수산(1종)	어선원부	800원

- 안 별표 제1호 중 타목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삭제’는 수수료 감면에 따라 정비한 사항임.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추진계획」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민원창고 업무 경감 및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¹⁾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안 제6조제4항 및 별표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u>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u> 수수료를 면제한다. 〈후단 신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u>민원문서의 발급</u> 수수료를 면제한다. <u>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u>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목</th><th>단위</th><th>수수료액</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td></td><td></td><td></td></tr> <tr> <td>(1) 성적증명</td><td>1건</td><td>무료</td><td></td></tr> <tr> <td>(2) 졸업증명</td><td>1건</td><td>무료</td><td></td></tr> <tr> <td>(3) 검정고시 성적증명</td><td>1건</td><td>무료</td><td></td></tr> <tr> <td>(4) 검정고시 합격증명</td><td>1건</td><td>무료</td><td></td></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성적증명	1건	무료		(2) 졸업증명	1건	무료		(3) 검정고시 성적증명	1건	무료		(4)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	무료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목</th><th>단위</th><th>수수료액</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삭제〉</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삭제〉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성적증명	1건	무료																																	
(2) 졸업증명	1건	무료																																	
(3) 검정고시 성적증명	1건	무료																																	
(4)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	무료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삭제〉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